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가단529526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천년

담당변호사 김창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한중경

변 론 종 결 2022. 5. 12.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관하여 2019. 4. 13. 체결된 재산분할 약정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22,0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E으로부터 동 E은행이 2017. 11. 20.경 소외 D에게 대출하였다가 상환받지 못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다음, 2020. 6.경 위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소1847328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25. “D은 원고에게 25,186,136원 및 그 중 22,981,113원에 대하여 2020.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위 D은 2014. 10. 20.경 피고와 혼인신고를 한 후 부부로서 생활하던 중 2015. 6. 16.경 피고와 공동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대금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6. 7. 24.경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와의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2019. 1. 28.경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자신의 지분(1/2)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슬하에 F 출생한 자녀 G가 있다) 명목 및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로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지분을 양도받으면서 2019. 10. 24.경 이 사건 아파트 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같은 날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위 주식회사 H 앞으로 설정하였다가, 2021. 8. 14. 소외 I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체를 대금 145,000,000원에 매도하여 2021. 9.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아울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를 2021. 9. 29.자로 말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 앞으로 재산분할해 주는 것은 D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사해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무자력이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 또한 D의 전 배우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잘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D과 피고 사이의 위 재산분할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인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원물반환이 불능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4. 10. 20.경 D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가정불화로 말미암아 2019. 1. 28.경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D의 지분 2분의 1을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양육비 명목 및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의 취지로 양도받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한 것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의 주장 중에는 피고와 D의 위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살피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위 각 증거와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D이 혼인에서 이혼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혼인생활 중 이 사건 아파트를 부부 공동으로 구입한 경위,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2분의 1을 양도받으면서 이 사건 아파트 위에 설정되어

있던 D의 주식회사 H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32,082,328원을 변제한 점, 피고는 유한회사 J에 대한 주식 3,000주를 D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자신의 주식 1,500주(주당 액면가 10,000원)를 D에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회기

별 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전라남도 목포시 K, L에 있는
M건물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7층 N호
철근콩크리트조
156.56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전라남도 목포시 K 대 1160.5㎡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160.5분의 58.93